

| | | |
|------|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| 제 호 | 의결사항 |
| 의결 | 2022. . . | |
| 연월일 | (제 회) | |

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고령군수 (군민안전과장) |
| 연 월 일 | 2022. . . |

법무통계담당 심사필

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제출일자 : 2022. . .

제출자 : 고령군수

1. 개정이유

-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(안) 개정
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
- 자연재난 표준 및 실무매뉴얼 개정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
기준 변경

2. 주요내용

- 개인위치 정보의 요청 활용 근거 및 수당·휴무 등에 대한
근무여건 개선 방안 반영
-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변경
 - 폭염, 한파 재난 유형에 대한 비상단계 기준 변경

3. 개정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- 다.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: 2022. 1. 14. ~ 2022. 2. 4.
- 라.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마. 규제영향 분석 결과 : 해당없음

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”로 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관할 구역”을 “관할구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본부장 :”을 “본부장: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차장 :”을 “차장: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통제관 :”을 “통제관: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담당관 :”을 “담당관: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본부장 :”을 “본부장: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차장 :”을 “차장: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대변인 :”을 “대변인: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통제관 :”을 “통제관: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담당관 :”을 “담당관: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 제7호”를 “제1항제7호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제3조 제2항”을 “제3조제2항”으로, “순으로”를 “순서로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2호 중 “제3조 제3항”을 “제3조제3항”으로, “관계기관”을

“관계 기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전단 중 “법 제17조 제2항”을 “법 제1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제10조 제1항”을 “제10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관한”으로 한다.

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개인·위치정보 요청·제공 및 이용)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, 생명·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·위치정보를 요청·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.

제14조제7항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관한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제5조 제1항”을 “제5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법 제3조 제5호의2”를 “법 제3조제5호의2”로 한다.

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계기관”을 “관계 기관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호 중 “중앙대책본부”를 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대책본부”를 “지역대책본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를 “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”로 한다.

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(수당 등) 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

않을 수 있다.

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조의4제5항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.

별표 제2호, 제6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재난수습 주관부서(제4조 제2항 관련)

| 재난관리 주관기관 | 재난 및 사고의 유형 | 주관부서 |
|--------------|---|--------|
| 1. 교육부 | 가.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| 총 무 과 |
| 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가. 우주전파 재난 나. 정보통신 사고 다. 위성항법장치(GPS) 전파혼신 | 군민안전과 |
| 3. 외교부 | 가.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| 총 무 과 |
| 4. 국방부 | 가.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| 군민안전과 |
| 5. 행정안전부 | 가. 청사 사고 | 재 무 과 |
| 6. 문화체육관광부 | 가.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| 여성청소년과 |
| 7. 농림축산식품부 | 가. 가축 질병 | 축산농기계과 |
| | 나. 저수지 사고 | 건 설 과 |
| 8. 산업통상자원부 | 가.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. 원유 수급 사고 다. 전력 사고 라.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| 기업경제과 |
| 9. 보건복지부 | 가. 보건의료 사고 | 보 건 소 |
| 10. 환경부 | 가.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. 식용수(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) 사고 다.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. 조류(藻類) 대발생(녹조에 한정한다) 마. 황사 사. 미세먼지 | 환 경 과 |
| 11. 고용노동부 | 가.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| 기업경제과 |

| | | |
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2. 국토교통부 | 가.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. 도로터널 사고 다. 육상화물운송 사고 라.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| 건설과 건설과 민원과 건축허가과 |
| 13. 행정안전부 | 가. 공동구(共同溝) 재난(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) | 군민안전과 |
| | 나. 다중 밀집시설 및 대형 화재·위험물 사고 | 군민안전과 |
| | 다. 일반 화재·위험물 사고 | 해당부서 |
| | 라.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| 건설과 |
| | 마. 풍수해(조수는 제외한다)·지진·화산·낙뢰·가뭄·폭염·한파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| 군민안전과 |
| 14. 금융위원회 | 가.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| 재무과 |
| 15. 원자력안전위원회 | 가. 원자력안전 사고 나. 인접 시·군 방사능 누출 사고 | 군민안전과 |
| 16. 문화재청 | 가. 문화재 시설 사고 | 문화유산추진단 |
| 17. 산림청 | 가. 산불 나. 산사태 | 산림휴양과 |
| 18. 질병관리청 | 가. 감염병 재난 | 보건소 |

비고: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.

[별표 6]

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(별표4 및 별표5 관련)

| 구분 | | 비상단계 기준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
| 1 자 연 재 난 | 가. 풍수해 (태풍·호 우·대설) | 1)비상 1단계 | 가) 「기상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(이하 “기상특보” 라 한다)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)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|
| | | 2) 비상 2단계 | 가)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)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|
| | | 3) 비상 3단계 | 가)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)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) 호우·대설·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|
| | 나. 지진· 지진해일 | 1) 비상 1단계 | 가) 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·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(이하 “특보” 라 한다) 중 규모 4.0 이상(해역은 4.5 이상)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)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|
| | | 2) 비상 2단계 | 가) 규모 5.0 이상(해역은 5.5 이상)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)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)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)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,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| 3) 비상 3단계 | 가) 규모 5.0 이상(해역은 5.5 이상)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)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)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,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|
| 다. 가뭄 | 1) 비상1 단계 | 농업용수 또는 생활·공업용수 분야 가뭄의 심각단계가 발표된 경우 |
| | 2) 비상2 단계 | 농업용수 또는 생활·공업용수 분야 가뭄의 심각단계가 발표되어 가뭄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|
| | 3) 비상3 단계 | 비상 2단계 이상이 지속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|
| 라. 폭염 | 1) 비상1 단계 | 일 최고기온 38℃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|
| | 2) 비상2 단계 | 일 최고 기온 38℃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고 국지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|
| | 3) 비상3 단계 | 일 최고 기온 38℃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|
| 마. 한파 | 1) 비상1 단계 | 한파경보가 발표되고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|
| | 2) 비상2 단계 | 한파경보가 2일 이상 지속되고 국지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|
| | 3) 비상3 단계 | 한파경보가 2일 이상 지속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|
| 2. 사 회 재 난 | 가.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(표준)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르는 경우 나.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.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| |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설치되는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제2조(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)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대책본부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고령군 <u>관할 구역</u>에 있는 기관(이하 “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”이라 한다) 장에게 행정상·재정상 조치 요구</p> <p>5. ~ 9. (생략)</p> | <p>제2조(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----- ----- ----- <u>관할구역</u>----- ----- -----</p> <p>5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3조(대책본부의 구성) ① (생략)</p> | <p>제3조(대책본부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|

② 본부장, 차장,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본부장 : 고령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
2. 차장 : 부군수
3. 삭 제
4. (생략)
5. 통제관 : 주무부서 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국장
6. 담당관 :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

③ (생략)

제4조(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)

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부장 : 대책본부 업무 총괄
2. 차장 : 본부장 보좌
3. 삭 제
4. 대변인 : 재난 수습홍보 총괄
5. 통제관 :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
6. 담당관 :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

7. (생략)

② 제1항 제7호에 따라 설치하

② -----

--.

1. 본부장: -----

2. 차장: -----
4. (현행과 같음)
5. 통제관: -----

6. 담당관: 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조(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)

① -----
-----.

1. 본부장: -----
2. 차장: -----
4. 대변인: -----
5. 통제관: -----
--
6. 담당관: -----

7.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제7호-----

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.

제5조(직무대행)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·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상황판단회의) ① (생략)

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.

1. (생략)
2. 제3조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
3. ~ 5. (생략)

③ (생략)

제10조(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) ① 본부장은 제3조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

제5조(직무대행) -----

----- 제3조제2항 -----

순서로 -----.

제9조(상황판단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2. 제3조제3항-----
----- 관계
기관 -----
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) ① -----

----- 법 제17조제2항-----

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난분야
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
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
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2조(과건근무자의 사전교육
등) ① (생략)

②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과건요
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
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
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
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
우선하여 과건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
장이 정한다.

<신설>

제14조(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
운영) ① ~ ⑥ (생략)

-----.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과건근무자의 사전교육
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0조제1항-----

-----.

③ -----
-- 관한 -----
-----.

제12조의2(개인·위치정보 요청
· 제공 및 이용) 본부장은 신속
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
경우 재난으로 인하여, 생명·
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
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
· 위치정보를 요청·제공 및 이
용할 수 있다.

제14조(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
운영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8조(재난상황의 통보 등) ① (생략)

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5조 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.

제19조(위기경보의 발령 요청) ① (생략)

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, 법 제3조 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0조(재난 예보·경보의 실시 등) ①·② (생략)

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

⑦ -----

----- 관한 -----
-----.

제18조(재난상황의 통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제5조제1항-----
-----.

제19조(위기경보의 발령 요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법 제3조제5호의2-----
-----.

제20조(재난 예보·경보의 실시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안전부장관,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도지사, 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22조(재난수습 홍보)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, 정보공유·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1.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

2. (생략)

3. 법 제16조에 따른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

4.·5. (생략)

6.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,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

<신설>

----- 관계기관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재난수습 홍보) -----

-----.

1. ----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지역대책본부 -----

4.·5. (현행과 같음)

6.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-----

제23조(수당 등) 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

다.

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조의4 제5항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고령군 군민안전과 | |
| 연 락 처 | (054) 950-6645 |